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06. 30.

발 의 자 : 송석준 · 박상용 · 김예지
김미애 · 조배숙 · 나경원
김성원 · 고동진 · 곽규택
유상범 · 이종배 · 박덕흠
성일종 · 서천호 · 윤상현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, 선거관리위원회
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투표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
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. 선거는 효율성뿐만
아니라 공정성이 핵심적 가치이나,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·이동 과정
등에서 발생한 의문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가치가 훼손되는 실정임. 게
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
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음.

이에 사전투표제 대신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를 재도입하되, 선거인
과 투표인 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은 높이고, 투표
신고와 투표절차는 기존의 사전투표절차 및 인터넷 등 전자절차를 활
용하여 제도 변경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며, 본투표일을 2일로 연

장하여 유권자의 투표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. 나아가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80%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, 선거 전후 대통령과 국회에 투표용지 및 투표함 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관리 업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사전투표기간”을 “부재자투표기간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사전투표참관인”을 “부재자투표참관인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사전투표관리관”을 “부재자투표관리관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 제목 중 “거소”를 “부재자·거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신고(이하 “거소투표신고”라 한다)를”을 “거소투표신고(이하 “거소투표신고”라 한다)나 부재자투표신고(이하 “부재자투표신고”라 한다)를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거소투표신고”를 “신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거소투표신고”를 “부재자투표신고, 거소투표신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거소투표”를 “부재자투표, 거소투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·제4호 및 제5호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각각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거소투표신고 또는”을 “부재자투표신고, 거소투표신고 또는”으로, “정당한 거소투표신고”를 “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, 거소투표신고”로, “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”를 “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(이하 “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”라 한다),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

신고인명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“거소”를 각각 “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, 거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거소투표신고서”를 “부재자투표신고서·거소투표신고서”로, “선상투표신고서의 서식, 거소”를 “선상투표신고서의 서식, 부재자·거소”로, “, 거소투표”를 “, 부재자투표·거소투표”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“거소”를 “부재자·거소”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거소”를 “부재자·거소”로 한다.

제44조의2의 제목 중 “통합선거인명부”를 “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, “선거인명부의”를 “부재자선거인명부의”로, ““통합선거인명부””을 ““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”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통합선거인명부”를 각각 “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사전투표기간”을 “부재자투표기간”으로, “선거인명부”를 “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선거인명부”를 “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통합선거인명부”를 “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“거소”를 각각 “부재자·거소”로 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거소”를 “부재자·거소”로 한다.

제58조의2제2호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한다.

제60조제2항 전단 중 “사전투표참관인”을 “부재자투표참관인”으로 한다.

제65조제5항 전단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한다.

제122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사전투표참관인”을 각각 “부재자투표참관인”으로 한다.

제146조의2의 제목 중 “사전투표관리관”을 “부재자투표관리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”을 “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사전투표관리관”을 각각 “부재자투표관리관”으로 한다.

제148조의 제목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5일부터 2일 동안”을 “4일부터 1일 동안”으로, ““사전투표기간””을 ““부재자투표기간””으로,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밀집지역”을 “및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·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각각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각각 “부재자투표소”로, “사전투표사무원”을 각각 “부재자투표사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”를 “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, “사전투표사무원”을 “부재자투표사무원”으로 한다.

제151조제3항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, ““사전투표함””을 ““부재자투표함””으로, “사전투표자수”를 “부재자투표자수”로 하고, 같

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”를 “불구하고 부재자 투표소에서”로, “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”를 “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선거일의 투표용지는 각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투표율, 투표 추세, 예상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 수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되, 구체적인 수량은 각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⑩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, 수량 및 투표용지의 봉합·보관·인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의 관리상황을 선거일 전 7일 이내,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5조제2항 전단 중 “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”을 “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”으로,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, “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”을 “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함”으로, “사전투표참관인”을 “부재자투표참관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”를 “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전투표”를 “부재자투표”로 하고, 같

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사전투표소(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”를 “부재자투표소(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”로 한다.

제15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58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의 경우,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.

제158조의 제목 “(사전투표)”를 “(부재자투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선거인”을 “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선거인”으로, “사전투표기간”을 “부재자투표기간”으로,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사전투표를”을 “부재자투표를”로,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전투표관리관은”을 “부재자투표관리관은”으로, ““사전투표관리관””을 ““부재자투표관리관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전투표함”을 “부재자투표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전투표관리관”을 “부재자투표관리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”를 “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“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

기우편으로 발송”을 “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”으로 하며, 같은 호 후단 중 “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”을 “부재자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부재자투표참관인”으로, “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”를 “부재자투표관리관이 지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“사전투표함을”을 “부재자투표함을”로 하며, 같은 호 후단 중 “사전투표함”을 “부재자투표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사전투표절차”를 “부재자투표절차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제1항에 따른 부재자투표의 경우,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자의 명단과 대조·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.

제162조의 제목 “(사전투표참관)”을 “(부재자투표참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”를 “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”을 “부재자투표소별로 2명의 부재자투표참관인”으로, “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기간 중에는 부재자투표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소”로, “사전투표참관인”을 “부재자투표참관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전투표참관인”을 각각 “부재자투

표참관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사전투표참관”을 “부재자투표참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사전투표관리관”을 “부재자투표관리관”으로, “사전투표참관인”을 “부재자투표참관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”를 “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”로 한다.

제163조제4항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한다.

제164조제4항 전단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사전투표관리관”을 “부재자투표관리관”으로, “사전투표사무원”을 “부재자투표사무원”으로 한다.

제165조제2항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한다.

제166조제5항 전단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사전투표관리관”을 “부재자투표관리관”으로, “사전투표사무원”을 “부재자투표사무원”으로,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한다.

제166조의2제2항 중 “사전투표관리관”을 “부재자투표관리관”으로 한다.

제173조제1항 본문 중 “選舉日전”을 “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·거소투표·선상투표 및 선거일의 투표 개표를 위하여 선거일 전”으로 한다.

제17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“사전투표”를 각각 “부재자투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전투표

함”을 “부재자투표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전투표함”을 “부재자투표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전투표함”을 “부재자투표함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전투표”를 “부재자투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한다.

제204조제1항 중 “거소”를 각각 “부재자·거소”로 한다.

제212조의 제목 중 “거소투표·사전투표”를 “부재자투표·거소투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한다.

제213조제3항 중 “사전투표참관인”을 “부재자투표참관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사전투표참관인”을 “부재자투표참관인”으로 한다.

제215조제1항 단서 중 “사전투표”를 “부재자투표”로 한다.

제218조의4제1항제1호 중 “사전투표기간”을 “부재자투표기간”으로 한다.

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“사전투표”를 “부재자투표”로 한다.

제230조제1항제1호 중 “사전투표참관인”을 “부재자투표참관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전투표관리관”을 “부재자투표관리관”으로 한다.

제242조제1항제1호 중 “사전투표소”를 “부재자투표소”로 한다.

제244조제1항 중 “사전투표사무원”을 “부재자투표사무원”으로, “거소”를 “부재자·거소”로 한다.

제247조제1항 중 “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”를 “부재자·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”로, “거소투표신고”를 “부재자투표신고·거소투표신고”로 한다.

제248조제2항 중 “사전투표사무원”을 “부재자투표사무원”으로 한다.

제249조제2항 중 “사전투표사무원”을 “부재자투표사무원”으로 한다.

제261조제8항제2호바목 중 “사전투표사무원”을 “부재자투표사무원”으로 한다.

제277조의2제1항 중 “사전투표관리관,”을 “부재자투표관리관,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,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.

제12조(선거관리) ①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이 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舉事務를 統轄·관리하며, 하급선거관리위원회(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違法·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38조(거소·선상투표신고)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(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)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·시·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·시·군이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

-----.

제12조(선거관리) ① -----

부재자투표관리관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부재자·거소·선상투표신고) ① -----

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
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
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
한다.

1.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사
유

2.·3.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람은 거소(제6호에
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
말한다)에서 투표할 수 있다.

1.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
에 장기거거하는 군인이나 경
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
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
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
(營內)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
자

2.·3. (생략)

4.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
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
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
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
자

5.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
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거

-----.

1. 부재자투표, 거소투표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부재자투표소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부재자투표소-----

5. 부재자투표소-----

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
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

5의2. ~ 6. (생략)

⑤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
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·시
·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
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
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
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
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
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(이하
“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”라
한다)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
한다.

⑥ 구·시·군의 장은 거소·
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
때에는 즉시 그 謄本(전산자료
복사본을 포함한다) 각 1通을
管轄區·市·郡選舉管理委員會
에 송부하여야 한다.

⑦ 第37條(名簿作成)第6項의 規
定은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
부의 작성에 이를 準用한다.

5의2. ~ 6. (현행과 같음)

⑤ 부재자투표신고, 거소투표신
고 또는-----

-----정당한
부재자투표신고, 거소투표신고-

-----부
재자투표신고인명부(이하 “부
재자투표신고인명부”라 한다),
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
표신고인명부-----

-----.

⑥ -----부재자투
표신고인명부, 거소-----

-----.

⑦ -----
-----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,
거소-----

⑧ 거소투표신고서·선상투표 신고서의 서식, 거소·선상투표 신고인명부의 서식, 거소투표·선상투표 사유의 확인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第39條(名簿作成의 監督 등) ① 選舉人名簿(거소·선상투표 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條에서 같다)의 작성에 관하여는 管轄區·市·郡選舉管理委員會 및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監督한다.

② ~ ⑨ (생략)

제44조(명부의 확정과 효력)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,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44조의2(통합선거인명부의 작

⑧ 부재자투표신고서·거소투표 신고서-선상투표신고서의 서식, 부재자·거소-----, 부재자투표·거소투표-----

第39條(名簿作成의 監督 등) ① -
-----부재자·거소-----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명부의 확정과 효력) ① -
-----부재자·거소--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44조의2(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

성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(이하 “통합선거인명부”라 한다)를 작성한다.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.

④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148조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합·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

의 작성) ① -----
-----부재자투표소-----
-----부재자선거인명부의-----

-----“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”-----
-----.

② -----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-----

-----.

③ 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-----
-----.

④ -----
-----부재자투표기간-----

-----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-----

-----.

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
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
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
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
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
·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
니 된다.

⑥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, 선
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
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
관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
정한다.

第45條(名簿의 再作成) ① 천재지
변, 그 밖의 事故로 인하여 選
舉人名簿(거소·선상투표신고
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條
에서 같다)가 멸실·훼손된 경
우 選舉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
한 때에는 구·시·군의 장은
다시 選舉人名簿를 작성하여야
한다. 다만, 제38조제6항에 따
라 송부한 거소·선상투표신고
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
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

-----.

⑤ -----
----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----

-----.

⑥ 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-----

-----.

第45條(名簿의 再作成) ① -----

-----부재자·거소-----

-----부재자·거소-----

-----부재자·거소-----

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읍·면·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

2. 3. (생략)

4. 천재지변 또는 전쟁·폭동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
②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·소재지 및 설치·운영기간을 공고하고,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.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

-----부재자투표소-----

1. -----

-----및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-부재자투표소-----

② -----

-----부재자투표소-----

-----부재자투표소-----

③ -----

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·사용협조, 설비,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,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.

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, 정보의 불법 유출·위조·변조·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⑥ 사전투표소의 설치·공고·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 ① · ② (생략)

-----부재자투표소-----

-----부재자투표사무원-----
-----.

④ 부재자투표소-----
-----부재자투표사무원-----

⑤ -----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-----

⑥ 부재자투표소-----
-----부재자투표사무원-----

-----.

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(이하 “사전투표함”이라 한다)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(이하 “郵便投票函”이라 한다)은 따로 작성하되, 그 數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 투표신고인수·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區·市·郡選舉管理委員會가 정한다.

④ . ⑤ (생략)

⑥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(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)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, 바코드에는 선거명, 선거구명,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.

③ 부재자투표소-----
--“부재자투표함”-----

-----부재자투표자수-----

④ .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불구하고
부재자투표소에서-----
-----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에서-----

⑦ · ⑧ (생략)

⑨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합·보관·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<신설>

第155條(投票時間) ① (생략)

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,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

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
⑨ 선거일의 투표용지는 각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투표율, 투표 추세, 예상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 수의 80~100%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되, 구체적인 수량은 각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⑩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, 수량 및 투표용지의 봉합·보관·인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의 관리상황을 선거일 전 7일,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第155條(投票時間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-----

-----부재

제158조(사전투표) ① 선거인(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)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.

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“사전투표관리관”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.

제158조(부재자투표) ①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선거인-----

-----부재자투표기간-----부재자투표소-----.

② 부재자투표를-----부재자투표소-----

③ 부재자투표관리관은-----

-----“부재자투표관리관”-----

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62조(사전투표참관)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,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정당·후보자·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.

-----.

⑨ 제1항에 다른 부재자투표의 경우,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자의 명단과 대조·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.

제162조(부재자투표참관) ①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부재자투표소별로 2명의 부재자투표참관인-----

-----부재자투표기간 중에는 부재자투표소-----
-----.

“투표관리관”은 “사전투표관리관”으로, “투표사무원”은 “사전투표사무원”으로 본다.

第165條(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) ① (생략)
② 사전투표소(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)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第166條(投票所内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) ① ~ ④ (생략)
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투표관리관”은 “사전투표관리관”으로, “투표사무원”은 “사전투표사무원”으로, “선거일에”는 “사전투표소 안에서”로 본다.

제166조의2(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) ① (생략)
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

-----부재자투표관리관-----
-----부재자투표사무원-----
-----.

第165條(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부재자투표소-----

-----.

第166條(投票所内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부재자투표소-----

-----부재자투표관리관-----
-----부재자투표사무원-----
-----부재자투표소-----
-----.

제166조의2(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부재자투

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開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舉日 오후 6시(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)후에 開票所로 옮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179조(무효투표) ① (생략)

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도 이를 無效로 한다.

1. 2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.

1. ~ 9. (생략)

10.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

제204조(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)

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

부재자투표함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79조(무효투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부재자투표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부재자투표소

제204조(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)

①

명부와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
명부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
하고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
와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
로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212조(거소투표·사전투표의
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
한 특례) 동시선거에서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
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
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
인의 투표지 회송

第213條(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
등에 관한 特例) ① · ② (생
략)

③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
인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 선
정·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
해 選舉에 참여한 政黨마다 2
人을, 무소속후보자는 1人을 선
정·申告하여야 한다.

④ 同時選舉에 있어서 사전투

-----부재자·거소-----

-----부재자·거소--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12조(부재자투표·거소투표의
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
한 특례)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부재자투표소-----

第213條(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
등에 관한 特例) ① · ② (현
행과 같음)

③ -----부재자투표참
관인-----

④ -----부재자

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,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·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이 선정·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·申告한 者 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抽籤에 의하여 지정한다. 이 경우 政黨이 선정·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規定에 따른 政黨順位의 앞順位의 政黨이 선정·申告한 者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.

第215條(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) ① 同時選舉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(開票參觀)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·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, 무소속후보자는 2人을 선정·申告하여야 한다. 다만, 區·市·郡選舉管理委員會는 거소투표·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

투표참관인-----

第215條(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) ① -----

-----부재자투표-----

2. ~ 7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⑤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·직원(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(선장을 포함한다)이나 警察公務員(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)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.

⑥ ~ ⑧ (생략)

제242조(투표·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1.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(재외투표소·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부재자투표관
리관-----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242조(투표·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부재자투표소-----

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생략)

第248條(詐僞投票罪) ① (생략)

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·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(投票事務員·사전투표 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)이 第1項에 規定된 行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.

第249條(投票僞造 또는 增減罪)

① (생략)

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·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(投票事務員·사전투표 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)이나 從事員이 第1項에 規定된 行위를 한 때에는 3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.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
① ~ ⑦ (생략)

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第248條(詐僞投票罪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부재자투표
사무원-----

-----.

第249條(投票僞造 또는 增減罪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부재자투표
사무원-----

-----.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
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

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1의2. (생략)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. ~ 마. (생략)

바. 제147조제9항, 제148조제3항 또는 제174조(개표사무원)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·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·유기하거나 해태한 자

2의2. ~ 6. (생략)

⑨ ~ ⑫ (생략)

제277조의2(질병·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, 투표관리관, 사전투표관리관, 공정선거지원단원, 투표 및 개표사무원(공무원인자를 제외한다)이 선거기간(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)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

-----.

1. 1의2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-----

-----부재자투표
사무원-----

2의2. ~ 6. (현행과 같음)

⑨ ~ ⑫ (현행과 같음)

제277조의2(질병·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) ① -----

-----부재자투
표관리관,-----

병·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
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
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
급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